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 경영위기 지원

+

## CHAPTER 1

중소기업  
사업정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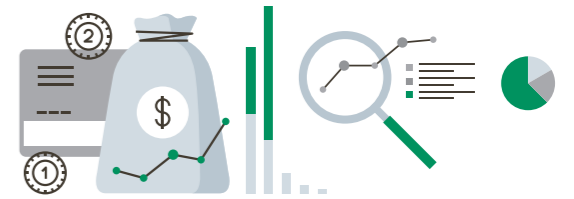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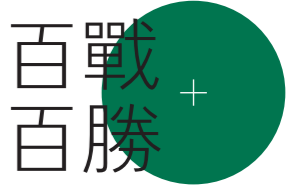
## CHAPTER 2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

## CHAPTER 3

조세·신용정보·  
정책금융기관  
제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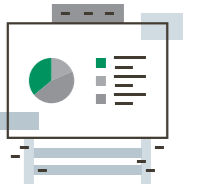
# 중소기업 사업정리

안내 +

+

## 01

### 중소기업 사업정리



CHAPTER 1

CHAPTER 1

#### 사업 정리란?

정의 | 중소기업 폐업시 필요한 행정처리\* 및 잔존요소\*\*를 처리를 하는 것

- \* 신고(폐업, 부가세, 법인세 등), 지급명세서 제출, 4대 보험 탈퇴 등
- \*\* 채무(상거래, 금융, 조세 등), 유류자산(설비,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유형 | M&A와 같은 양도형 사업정리와 폐업 또는 법인 해산 같은 해체형 사업정리가 있음

유형	제반절차	비고
양도형 사업 정리	M&A, 자산매각 등	- 영업이나 자산이 환가 가능한 가치가 있을 때 - 사업정리 초기에 시도
해체형 사업 정리	폐업신고(국세청) 청산 혹은 파산 절차 후 법인해산 등기(법원)	- 양도형 사업정리가 불가능할 때 (청산절차) 자산 > 부채 (파산절차) 자산 < 부채

#### 사업정리 애로요인

소요기간 장기화 | 회사정리 기간의 장기화(평균 8.6개월)로 인해 재도전까지 길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전문가 | 회사정리 과정에서 이용한 자문서비스에 대해서 실효성과 경제성\* 모두 만족도가 낮은 상태

\* 회사정리과정에서 각종 자문, 파산비용 등 평균 6천만원 소요

#### 사업정리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사업정리 前 전문가와의 심층상담은 필수 !!!

사업정리 하기 전 세금, 노무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사업정리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향후 재도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뿐 아니라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음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업정리컨설팅 이용

##### 어렵다고 사업정리만이 최선일까요?

기업이 처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생절차나 구조개선을 통한 위기 극복도 가능

- 진로제시컨설팅, 구조개선전용자금 이용

#### 폐업시 행정처리

##### 폐업 신고

면허 또는 허가증 있는 사업의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됨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폐업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를 누락 시 無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법인세(소득세) 신고

매출액에 추계로 과세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면, 無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와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를 부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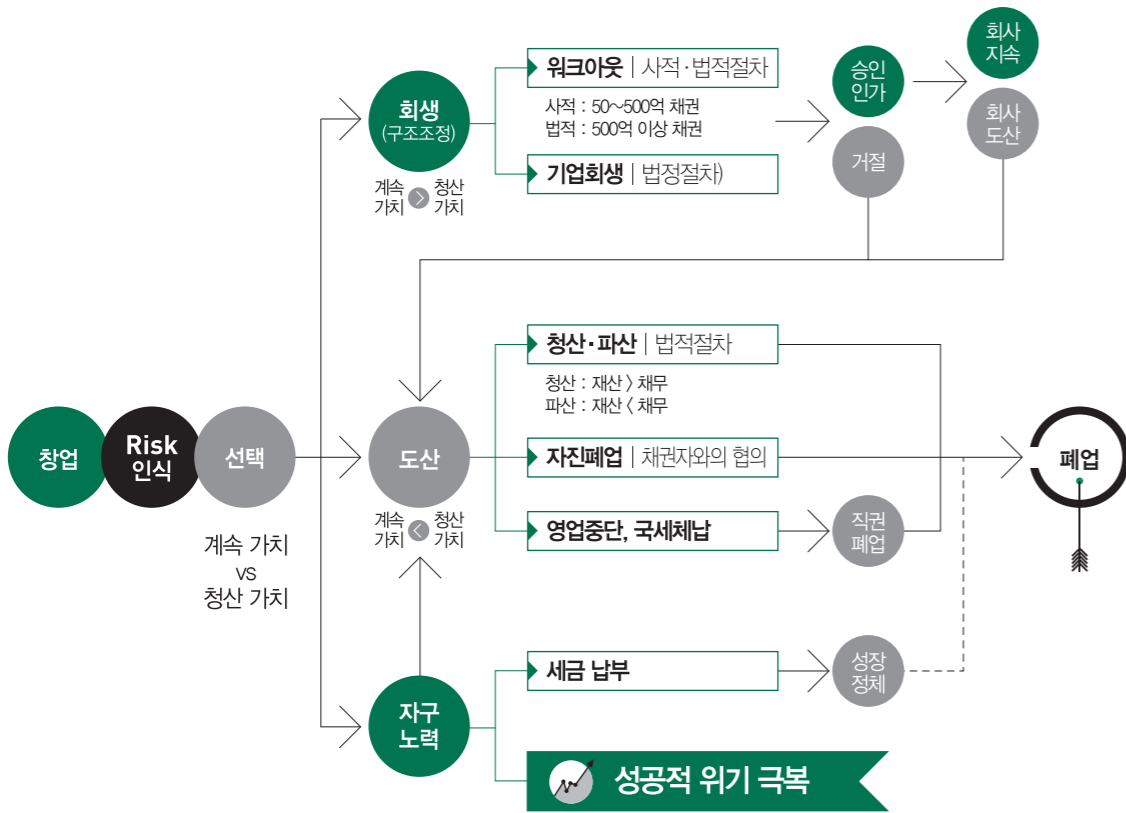
#####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4대 보험을 계속 부담하게 됨

# 중소기업 사업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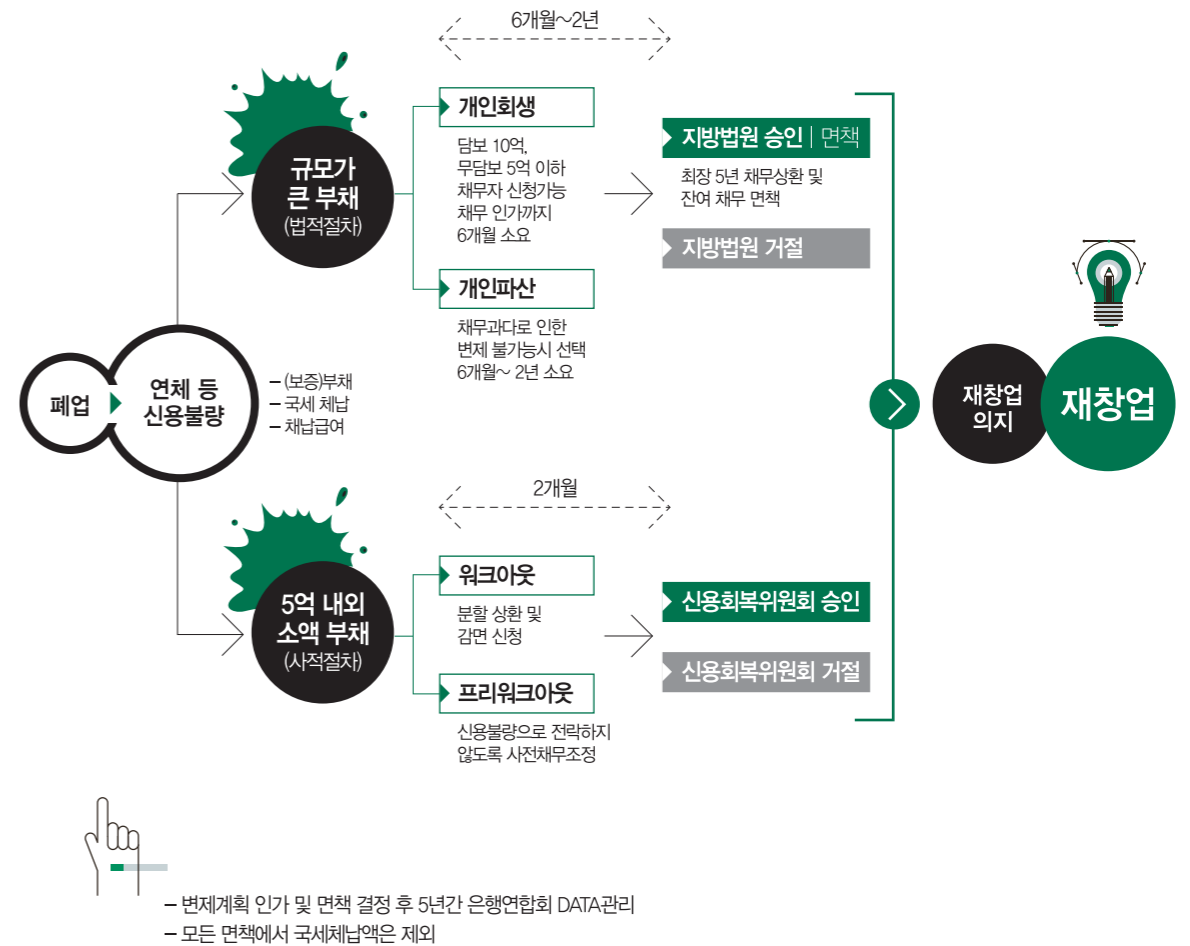
## 법인 폐업 프로세스개인(신용회복) 재도전 프로세스( I )



• Risk : 매출급락, 시장불안, 은행독촉, 부도 경고 등




## 법인 폐업 프로세스개인(신용회복) 재도전 프로세스(II)



- 변제계획 인가 및 면책 결정 후 5년간 은행연합회 DATA관리  
- 모든 면책에서 국세체납액은 제외


# 중소기업 사업정리

유의사항 

## 02

### 사업정리 유의사항

사업정리 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정리해야 위험을 최소화하고 재도전 하는데 소요기간 크게 줄일 수 있음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업정리컨설팅을 이용

 **문의처** (세무·법률 상담) 재도전종합지원센터 02.3430.3180  
(사업정리컨설팅)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5, 9635

#### 사업정리 전에 경영위기에 닥쳤을 때 국세 징수유예 신청

- ▶ 기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국세 납부기한이 되기 전에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가 가능
- ▶ 그러나, 국세 납부기한이 지나고 독촉기간(최대 1개월)내 체납상태에서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승인도 까다롭고, 증가산금만 면제됨

#### 국세의 부과와 소멸

- ▶ 법원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국세는 감면이 안 되고, 체납세금에 대해 가산금 3%와 함께 매월 1.2%씩 연 14.4%로 최대 5년간 증가산금이 부과됨
  - (예시) 5천만원 5년 체납 시 가산금 3,750만원(5,000\*75%)
- ▶ 체납세금이 5년(5억원이상 10년)이 경과되면 징수할 수 없으나, 세무당국에서 5년 이내에 재산압류를 하거나 독촉할 경우에는 국세 소멸기간이 다시 시작하며, 재산이 압류될 경우에는 국세 소멸시효는 중단됨

#### 과점 주주의 제2차 납세의 의무

- ▶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한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는 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 법인의 주주 본인과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자

#### 소득세(법인세)의 신고 누락 시 문제

- ▶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을 할 경우, 매출액과 이익을 추정하여 소득세(법인세)를 부과



- ▶ 폐업 시에도 매출액이 발생했다면 신고기한 내에 매출액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폐업 청산 시 부동산 경매

- ▶ 법원 파산으로 의한 양도 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를 제외하고, 부동산 경매 등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함
- ▶ 빚을 정리한 후 본인에게 돌아온 금액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 대표이사 가지급금


- ▶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로 폐업하게 되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법인에 상환해야함
  - 법인에서 현금이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어 회계상 일시적 비용으로 처리한 회계계정

#### 폐업 시 재고자산

- ▶ 폐업 시 회계장부상 재고자산이나 집기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함
- ▶ 회계장부상 잔존자산을 폐기하거나 매각 손실 처리하여 폐업하는 것이 바람직



# 중소기업 사업정리

종합안내 

03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경영위기 기업 및 재창업 기업의 재도전 종합 상담 및 지원 창구로 상담, 회생, 재창업·구조개선 자금 용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32, 9633

**신청대상**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사업실패 후 재기를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는 재도전 기업

**지원내용** 법률, 세무, 회생, 신용회복 상담 및 재창업·구조개선 자금 용자 지원  
 • 필요시 전문상담은 서울센터와 연계

**신청방법** - 온라인(www.rechallenge.or.kr) 상담  
 - 전화(02.3430.3180) 상담  
 - 센터방문 상담

지역	주소지	연락처
서울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9 명우빌딩 3층	02.3430.3180
서울서부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기유통센터 사무동 14층	02.6678.4150
경기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중기지원센터	031.259.7968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감전동) 보생빌딩 에이동 1층	051.630.7426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032.450.0532
대구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90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601.5277
광주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지역본부	062.600.3021
대전	대전 서구 청사로 136(월평동) 대전무역회관 15층	042.866.0153
경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01호 경남지역본부	055.212.1384

 컨설팅

04

##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기업에 폐업·파산 등에 대하여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정리를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5, 9635

**신청대상** 사업정리 희망기업,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사업정리 판정기업

**컨설팅 내용** 사업정리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각종신고 절차 안내 및 토지·건물 등 재고물품 처분 방법

**재무·세무 컨설팅**  
 부가세·법인세 등 행정절차 및 사업정리에 관한 절세 방법


**법무, 노무 컨설팅 및 계획 제시**  
 채무 및 신용회복 방법, 임금 및 고용관계 정리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사업정리 계획 제공

**지원내용** 컨설팅비용 지원(부가세는 기업부담)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rechallenge.or.kr)


# 중소기업 사업정리

채무정리 

## 05

### 법인기업 파산 제도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의 모든 재산을 매각하여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후 해산하는 법적 제도

 문의처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 02.3430.3180

- 신청자격**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로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기업의 이사 또는 청산인
  - 법인기업의 모든 이사가 아닌 일부 이사만 파산 신청할 경우에는 파산원인의 사실을 소명해야 함
- 신청비용** 부채총액 5억원 미만인 채무기업은 조사위원 보수 및 송달료 등 최소 500만원 소요
  - 채무기업의 부채 총액이 많을수록 조사위원 보수가 증가하여 신청비용도 같이 증가함
- 소요기간** 파산신청 ~ 파산선고까지 약 1개월  
파산선고 ~ 종결까지 약 1년 소요
- 파산 효력**
  - 채무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게 매각·배당
  - 법인은 파산·종결하면 해산하여 법인격이 소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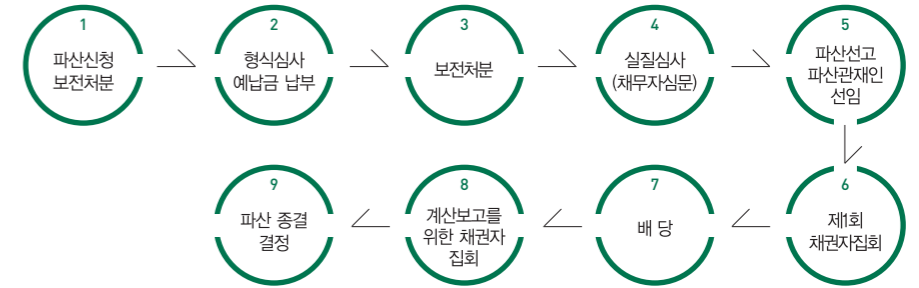
**신청방법** 신청인, 채무자, 신청 취지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

\* 회사 현황,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자산·부채 현황 등





신청절차




파산선고 후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극히 적어 조세, 임금, 파산절차의 비용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절차 폐지

기업 파산시 유의할 사항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와 함께 법인 해산으로 동일 법인으로 계속경영 불가

# 중소기업 사업정리

참고 

## 참고 | 법인기업 채무조정제도 비교

구 분	중소기업 워크아웃 계속가치 > 청산가치	기업회생 계속가치 > 청산가치	기업파산 계속가치 < 청산가치
대상	총 채무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경영위기 기업 중 회생 가능성 높은 기업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
대상 채무	채권은행협의회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	기업의 모든 채무	기업의 모든 채무
내용	경영애로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상호 조정하여 경영 정상화 계획 실행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영애로 기업이 회생계획 대로 경영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채무는 면책	구조조정에 실패한 회생불능기업의 모든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 변제하고, 해산하여 소멸
감독주체	채권보유 금융기관(사적조정)	법원(법적조정)	법원(법적조정)
채무조정	금융기관의 채권행사 유예, 채무조정, 이자감면 및 출자전환 등 협약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가능	기업의 채무를 영업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환, 나머지는 감면 혹은 출자전환	기업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장점	- 일시적 경영자금 유동성 부족 해결 - 기업회생에 비해 신속한 구조조정 가능	- 정상적인 영업가능 - 강제 집행 등 무분별한 개별적 집행 중지가능	- 채권자·채무자 조세부담 경감 - 회생절차에 비해 간편
단점	- 채권 금융기관에 의해 경영권 포기 또는 간섭 - 금융기관 이외 상거래 채무 등은 조정 불가능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 공공정보 등재로 인한 행정청의 영업제제 및 거래단절 가능성 - 기업의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민간의 연대보증 채무는 존재	- 법인 계속경영 불가 (법인의 해산) - 법인기업 해산으로 주채무가 면제되더라도 민간의 연대보증 채무는 존재
소요기간	채무 변제시까지	회생계획기간(보통10년)	보통 1~2년

 유효설비

##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전환 및 휴·폐업 시  
보유자산의 신속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중개장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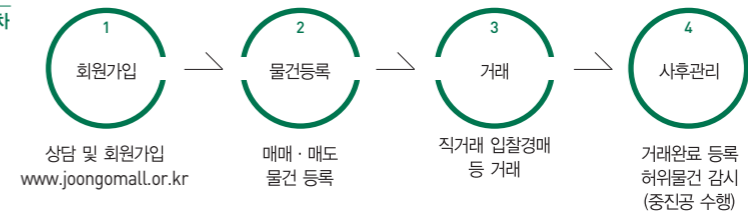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4, 9627

**주요대상** 사업전환·회생·재창업·휴·폐업기업 등 유류자산의 매매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  
 • 유류자산 : 중고 기계설비, 공장, 원자재, 무형자산

**지원내용**  
 - 유류자산의 매각·매입 물건 정보 제공  
 - 입찰정보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 직거래, 입찰경매, 역경매를 통하여 자산거래  
 - 유류자산 거래정보 무료 홍보

**이용기간** 연중 상시

**신청절차**



**이용** 중소·벤처기업자산거래중개장터 홈페이지(www.joongomall.or.kr)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 경영위기 지원

+

CHAPTER 1

중소기업  
사업정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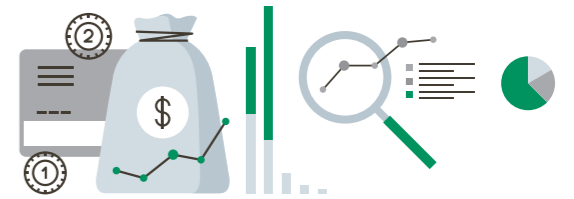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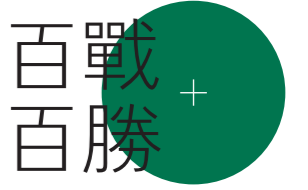
CHAPTER 2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


CHAPTER 3

조세·신용정보·  
정책금융기관  
제도 지원





#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컨설팅 

## 01

###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자금 및 기업회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5, 9635

**지원요건** 지원요건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영위기 중소기업

- ▶ 경영단계에 있어 재도약(Re-challenge)이 필요한 기업
  - 다만, 신청기업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여부 선별가능
- ▶ 연속 적자, 매출급감 등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및 임직원 등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컨설팅 내용**

- ▶ 기업 기술경쟁력 분석,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평가
- ▶ 재무재표 실사 및 추정,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 회생인가 가능성 등 심층 분석

**지원내용** 컨설팅비용 지원(부가세는 기업부담)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rechallenge.or.kr)

 컨설팅

## 02

### 중소기업 구조개선 계획 수립 지원

구조개선 추진이 필요한 경영위기 기업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사업, 마케팅, 생산, 재무 등 사업 전반의 구조개선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5, 9635

**신청대상** 경영애로로 구조개선 추진이 필요한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금융기관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대상(B, C, D등급)으로 선정된 기업
- ▶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경영정상화 및 워크아웃 추진 중인 기업
- ▶ 회생절차인가 중소기업(관할법원의 추천시 인가이전에도 지원가능)
-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진단받은 기업
- ▶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청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기업
-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 ▶ 자체 구조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구조개선계획수립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기업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및 임직원 등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내용** 컨설팅비용 지원(부가세는 기업부담)

과제분류	컨설팅 내용
영업 마케팅 구조개선	거래처 및 산업 제품 서비스 분석, 마케팅 전략, 수출지원, 품목확장 및 다각화 전략 등
생산 / 구매 / 관리 구조개선	프로세스 개선 및 효율화, 원가·비용 절감방안, 재고관리 등
조직 구조개선	인력효율화, 인건비 절감, 인사체계 개선 등
재무 구조개선	증자 등 자금조달, 유휴자산 매각 등

#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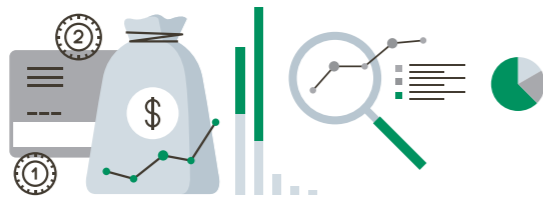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 재기지원시스템 (www.rechallenge.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공고 참조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컨설팅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5, 9635

**신청대상**

- >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 업무제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으로서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 제휴법원 : 서울중앙, 인천, 수원, 의정부, 창원,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울산, 제주, 전주지방법원
- > 은행권 추천 회생절차 신청 준비기업

**컨설팅 내용**

-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 대표자심문 답변서
- > 채권목록 작성
- > 시부인표 작성
- >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
- > 회생계획안 작성
- > 관계인집회 관련 서류
- > 회계세무 자문 등

**지원내용** 컨설팅비용의 최대 3천만원까지(컨설팅 초과금액과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rechallenge.or.kr)

#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 04

## 중소기업 간이회생 제도

부채가 30억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 회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회생인가 소요기간 및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 법적 제도

 문의처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 02.3430.3180


**신청자격** 부채가 30억원 이하인 법인, 개인 소액영업소득자  
 • 간이회생 신청을 하는 때에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함


**신청비용** 인지대, 예납비 등 약 500만원

**소요기간** 3~4개월

**기업회생 계획 인가 효력**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경영하여 채무를 상환하며, 통상 회생계획은 일부 출자 전환 후 일부 현금변제(최장10년 분할변제)로 진행

**신청방법** 신청인, 채무자, 신청 취지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  
 \* 회사 현황,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자산·부채 현황 등


**꼭 알아주세요!**  - 회생제도를 통해 주채무가 감면될 경우,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연대보증 채무도 같이 감면되나, 민간의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존재

채무조정 

 채무조정

## 기업회생 제도

경영난으로 채무를 갚기가 어려울 경우,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결의를 거쳐 채무를 기업이 감당할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감면하거나 주식전환 등으로 기업회생을 돕는 법적 제도

 문의처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 02.3430.3180

**신청대상** 채무를 변제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채무가 있는 기업(법인, 개인 포함)  
 • (참고) 채무기업이 파산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자, 주주·지분권자도 신청 가능

**신청비용** 자산총액 50억원 미만인 채무기업은 조사위원 보수 및 송달료 등 최소 2,200만원 소요  
 • 채무기업의 자산총액이 많을수록 조사위원 보수가 증가하여 신청비용도 같이 증가함

**소요기간** 8~9 개월 소요

**기업 회생 계획안 인가 효력**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경영하여 채무를 상환하며, 통상 회생계획은 일부 출자 전환 후 일부 현금변제(최장10년 분할변제)로 진행

**신청방법** 신청인, 채무자, 신청 취지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  
 \* 회사 현황,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자산·부채 현황 등

## 05

#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 신청절차



### 기업회생 제도 장·단점

**장점** |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사 경영을 지속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일률적인 채무조정가능(사채포함)

**단점** | 불리한 공공정보 등재로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하고, 납품처 등과 거래관계 단절 가능성 존재

**꼭 알아주세요!** - 회생제도를 통해 주채무가 감면될 경우,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연대보증 채무도 같이 감면되나, 민간의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존재  
- 중소벤처기업부 회생컨설팅을 통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워크아웃

부실징후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전제로 대출만기 연장, 금리 재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

문의처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02.3145.8383

### 신청대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 실시하는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부실 징후기업) 기업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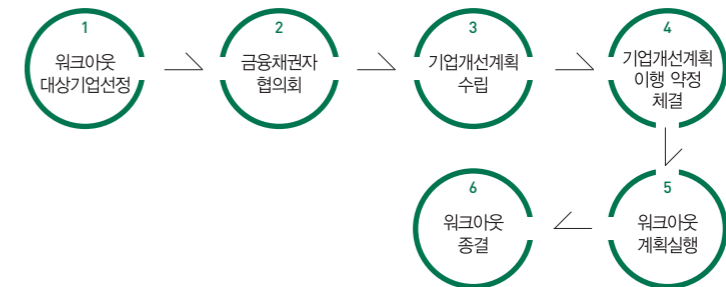
금융채권자\*의 채무에 대해 채권행사 유예, 이자감면, 출자전환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지원

\* 민간은행, 중진공, 신·기보, 무역보험공사 유동화전문회사(SPC) 등 금융채권을 보유한 재(非)금융 기관도 참여

### 신청방법

대표자가 주채권은행 거래 영업점에 상담 후, 신청

### 신청절차




### 장점 및 단점

**장점** | 법에 의한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가능, 금융기관의 불리한 신용정보 등록 없이 신속하게 채권행사 유예,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가능

**단점** | 참여 채권자범위 확대로 인한 절차지연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채권 금융기관의 경영권 간섭 발생


#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채무조정 

07

##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채권은행들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

 문의처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02.3705.5223

**신청대상** 일시적 자금난 겪는 중소기업으로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부실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기업  
 • 기업의 지원요청시 신용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지원내용** 금융기관의 채권행사 유예,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보증기관의 보증비율 우대 (60~70%), 경영상황 개선 시 보증료 추가 인하(최대 0.3%p), 지원 기간(3년) 종료 후 우대보증 지원(보증비율 90%, 보증료를 0.2%p인하) 등 지원  
 \* 민간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신청방법** 대표자가 주채권은행과 협의 후, 신청



 금융

08

## 사업전환 지원

현재 주력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신규업종에 진출하거나, 주력업종을 유지하면서 신규업종을 추가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2, 9624

**신청대상** 업력, 매출규모 등 기본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현재 주력업종을 신규업종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기업

**사업전환 지원 기본요건**

- > 업력 3년이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기업
- > 사업전환 대상이 되는 기존업종의 매출비중이 최근 결산연도 기준 30% 이상 일 것
- > 신규업종이 '용자제외 대상업종'인 경우 제외

**사업전환 유형**

구 분	사업전환내용	전환비중
업종전환	현재 영위업종 사업 폐지 → 새로운 업종 전환	3년 이내 완전전환
업종추가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년 이내 30% 이상*

\* 전환비중 : 업종 전환(추가)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지원내용

**융자지원**

- ›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설·운전자금 융자
-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6년 상환)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3년 상환)
- › 대출한도 : 7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컨설팅지원(기술·경영 전 분야)**

지원한도 : 컨설팅비용의 65%이내(30백만원한도) 보조

**세제지원**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수도권 과밀지역 이외에서 일정수준 이상 전환 사업 소득 발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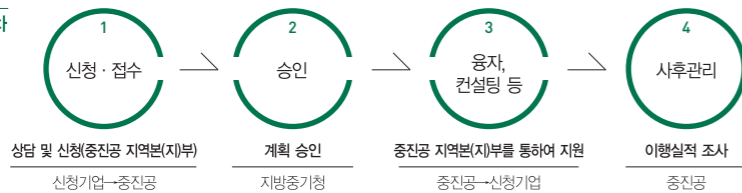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신청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

신청절차



# 사업전환 기술개발

사업전환 추진기업에 R&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64

지원규모

5개 과제( '18년 예산, 8억원)

지원대상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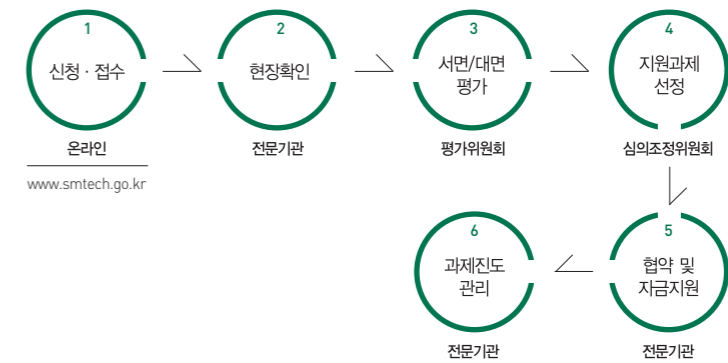
지원내용

개발 총 소요비용의 75%(최대 1.5억원, 개발기간 최대 1년)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현물 또는 현금 부담(이중 현금 50% 이상 부담)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금융 +

10

## 구조개선 전용자금

부실 징후가 보이는 중소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책자금을 대출하여 조기 정상화를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5

### 신청대상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 은행의 신용위험 평가결과 ABC등급 기업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기업
  - 자산건정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 ▶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 중진공 조기경보 실태조사 결과 경보 판정기업 등
- ▶ 진로제사건실링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기업
-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불리한 신용정보 등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 추진 기업
- ▶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료 후 3년 이내 기업

### 주요 용자제한기업

-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 질서문란, 청산절차의 정보 등록기업
- ▶ 정책자금 용자심사 탈락기업으로 6개월 미경과 기업
- ▶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
  - ※ 자세한 사항은 2018년도 정책자금 용자계획 참조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게시 [www.rechallenge.or.kr](http://www.rechallenge.or.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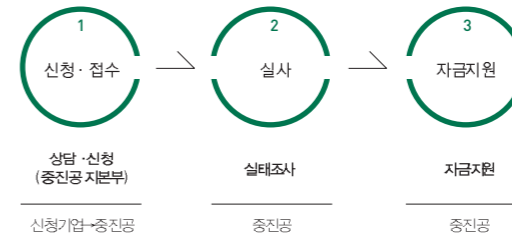


- ▶ 용자지원
  - 용자범위: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에 한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준용(변동금리)
    - 20181분기 기준금리 2.3%/기업별 적용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기간: 담보부 대출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신용 대출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대출 한도: 연간 10억원(3년간 10억원 이내)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신청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

### 신청절차



#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금융 +

11

## 성장사다리 재기지원펀드

은행·민간투자사가 공동출자로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투자사가  
우수한 기업에 펀드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도 창출하는 펀드

**투자대상** 회생, 워크아웃, Pre-workout, Fast-Track 진행 기업

### 성장사다리 재기지원펀드 민간 운용사 소개

#### 나우아이비캐피탈 [www.nauib.com](http://www.nauib.com)

**운용사 소개** : 2003년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 및 성장지원투자 분야에 특화된 여신  
전문금융회사

**투자절차** : 1차 검토(회사소개서, 사업계획) → 공장방문 및 면담 → 2차 검토 → 기업  
IR 실시 → 투자조건 협의 → 기업실사(회계법인) → 투자의사결정 및 투자계약 체결

**투자상담** : T. 02.565.6234

#### 케이스톤파트너스 [www.keystone.co.kr](http://www.keystone.co.kr)

**운용사 소개** : 재무구조개선 또는 구조조정 지원 투자를 위한 2007년 설립된 전문  
투자회사

**투자대상** : 회생, 워크아웃 또는 은행관리 중인 중소·중견 기업

**투자절차** : 이메일 접수 → 서류심사 → 투자상담 → 예비실사 → 투자조건 협의 →  
정밀실사 → 투자 본계약 체결 및 투자

**투자상담** : T. 02.782.9885 keystone@keystone.co.kr

#### 에버베스트파트너스 [www.everbestpartners.com](http://www.everbestpartners.com)

**운용사 소개** : 중소·중견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턴어라운드 지원코자 2012년  
설립된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투자대상** : 회생·워크아웃기업 및 정상기업 중 사전적 구조조정을 원하는 기업(부채  
비율 과다기업 등)

**투자절차** : 담당자 면담(투자대상여부 파악) → 자료검토 → 공장방문 → 투자조건  
협의 → 기업실사 → 투자의사결정 → 본계약 체결

**투자상담** : T. 02.568.4752

+







백전백승, 재도전 지원제도

# 경영위기 지원

+

CHAPTER 1

중소기업  
사업정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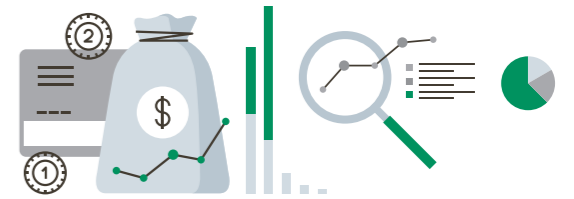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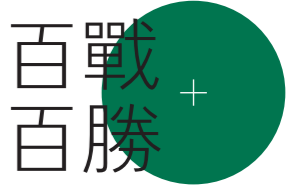
CHAPTER 2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

CHAPTER 3

조세·신용정보·  
정책금융기관  
제도 지원




# 조세·신용정보·정책금융기관 제도 지원

조세지원 

01

## 재기중소기업인 조세지원

국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재기기업인에 대한 원활한 재기를 지원

 **문의처** (신청) 관할 세무서에 신청 126  
(상담)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세제문의 02.3430.3180

### 재기중소기업인 국세 징수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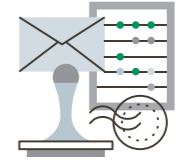
**신청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이 위기에 처한 자

-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 ▶ 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따른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18년 시행예정)

**지원 요건** ▶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봄) 미만이고 신청일 당시 3천만원( '18년 5천만원 상향예정) 미만인 자

- ▶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함)의 평균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자
  - 중진공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10억원
  -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10억원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 금액 제한 없음
- ▶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 ▶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 ▶ 신청일 당시 다음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출 것





-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할 것
-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
-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것

**지원내용**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최대 3년 이내 징수유예  
• 관할 세무서에서 징수유예기간중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납부할 국세(세목, 납부기한, 세액 등), 징수유예를 받은 이유와 기간 등을 징수유예신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126) 신청  
\* 신청서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참조

**근거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 유예 특례

**신청대상** 국세 징수유예 신청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을 최대 3년간 유예

**신청방법** 납부할 국세(세목, 납부기한, 세액 등),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이유와 기간 등을 체납처분유예신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126) 신청  
• 신청서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참조

**근거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 조세·신용정보· 정책금융기관 제도 지원



###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소멸대상** '17.6.30.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

#### 무재산 기준

- > '17.6.30. 현재 결손처분
- > '17.6.30. 현재 체납처분을 중지
- > '17.6.30. 현재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
- > '17.6.30. 현재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
- > '17.6.30. 현재 재산가액이 체납액 대비 현저히 부족 등

**적용 대상자**

- > (수입기준)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보다 낮은 자
- > (재기사업자) '17.12.31. 이전 폐업한 후 '18.12.31.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 (조세법 등 제외)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을 받거나 재판·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제외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 126)에 신청  
\* 신청서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참조

**신청기간** '18.1.1. ~ '19.12.31

**소멸한도** 인당 3,000만원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 신용정보

### 신용정보 불이익 해소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해 재기지원자에 대해 불리한 신용정보를 금융기관간 공유 제한 및 신속한 신용등급 회복 지원

**문의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기획팀 1544.1040

### 금융기관간 불리한 공공정보 공유제한

**적용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결정, 법원 개인회생 인가·파산면책 등을 통해 신용이 회복된 자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을 융자 받은 기업인


**불리한 신용정보 공유제한**

- > 재기사업자(중진공 재창업자금을 받은 자, 신보·기보의 재기지원사업자 등)의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회사 간 공유 및 개인 신용등급 반영을 제한
- \* 공유제한 정보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확정,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확정 정보 등

**신청절차** 별도 신청절차는 없으며, 재창업자금 융자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공유제한

**꼭 알아주세요!** - 금융기관간 불리한 공공정보를 공유만 제한하는 것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과거 채무불이행 정보를 직접 관리할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금융거래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조세·신용정보· 정책금융기관 제도 지원

제도개선 

## 03

### 정책금융기관 제도 개선

창업기업인의 실패부담 완화 및 실패기업인 신규보증 신청 가능토록 정책금융기관 제도 개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042.481.6841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팀 055.751.9633  
신용보증기금 재기지원부 053.430.4416 기술보증기금 회생관리부 051.606.7493

####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부종성(附從性) 적용

- ▶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한해 회생추진 기업(법정관리기업) 및 파산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면 연대보증인(기업인)의 채무도 감면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개정(2012.12)
  - 신용보증기금법(제30조의3)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37조의3) 개정(2013.5)

#### 정책금융기관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

- ▶ **중진공, 신·기보** | 정책자금 융자(보증) 시 창업 7년내 기업에 대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17.8)
  - 향후 7년 초과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면제 확대 예정

#### 우수 재기희망기업인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 감면

- ▶ 우수 재기희망기업인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 채무감면 비율을 최대 75%(민간금융기관 최대 60%)까지 확대(2016.3)
- ▶ 동시에 중진공, 신·기보가 신규 재창업자금을 공동 지원(2016.3)

#### 신·기보가 대위변제기업인(은행 빚을 대신 갚아준 기업인)에 대해 신규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 신·기보 법상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이 금지되어 보증기관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 ▶ 대위변제 기업인에 대해 3년 내 재보증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 조항 삭제(2016.9)



# 기타 지원제도 안내

TIP 

## TIP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제도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창업기업 등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크라우드 펀딩이란?** > 군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의미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로,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 2016.1. 관련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내 도입 ·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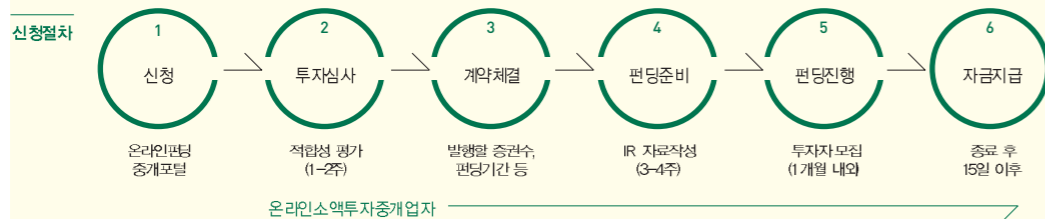
**장점** > 스타트업 등 대출이 어려운 기업의 금융소요문제 해결  
 > 프로젝트 진행 시 SNS 매체와 연계 가능하여 제품 출시 이전에 신제품 마케팅이 가능  
 > 누구에게나 프로젝트가 공개되어 크라우드 펀딩 성공 이후 전략적 제휴 파트너 섭외 용이

**주요 활용대상** >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법인 기업



**신청대상** > 비상장 중소기업인으로서 ① 창업 후 7년 이내이거나 ② 프로젝트성 사업(예 : 영화, 미술, 음악 등 제작 Project)을 수행하는 자  
 • 벤처기업 · 이노비즈 기업의 경우 창업 후 7년 초과시에도 가능  
 • 일부 업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무도장 등 창업지원법 상 제외업종)은 불가

**한도 모금액** > 연간 7억원 이내





**중개 수수료** > 6~10%(모집 금액 등에 따라 차등 부과, 중개포털별로 상이)

**신청기관** > 신청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2017년말 14 개사)가 운영하는 온라인펀딩 중개포털을 통해 접수 가능

<b>온라인펀딩 중개포털</b> > Funding4u invest.funding4u.co.kr T. 02.2606.8846	ktb Investment Securities crowd.ktb.co.kr T. 1588.3100	유진투자증권 crowd.eugenefn.com T. 1588.6300	위비크라우드 wibecrowd.com T. 1588.1000
키움증권 crowd.kiwoom.com T. 1544.9000	CROWDY invest.ycrowdy.com T. 031.698.2568	OHMYCOMPANY www.ohmyfunding.com T. 070.4412.2556	IBK투자증권 crowd.ibks.com T. 1544.0050
ucanstart. www.ucanstart.com T. 070.5097.1456	yinc www.yinc.kr T. 02.6275.1024	Wadiz www.wadiz.kr T. 070.5088.5031	iAN (주)이안투자 www.ian.re.kr T. 02.783.2296
			OpenTrade otrade.co T. 02.2051.9979

### 온라인펀딩모집 성공사례

기업명	사업내용	모금액(원)
디랩	초·중·고·성인 대상 코딩 교육 제공	499,993,000
세븐비어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를 통해 특색있는 수제맥주 생산	300,000,000
아이리시스	홍채인증기술 기반 생체인증보안 전문 회사	300,000,000
싸타이코리아	전기차 안전성 평가장비 및 배터리 성능 평가장비개발	299,988,000
로보프린트	건물외벽 도색시 사람 대신 로봇을 이용하여 공사	298,000,000
리플포유	해외송금,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252,000,000
스마트골프	스크린골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200,043,000
엘메카	중증환자 교통감소를 위한 인공지능석션기 개발	190,303,000
올로케이션	차량 위치관제서비스 개발	150,000,000

출처 <http://www.crowdnet.or.kr>

#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안내

TIP 

## TIP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주도 지원
- 지원조건**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사업자  
 > 정규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 모두 지원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지원 제외대상** >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공공기관은 지원제외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연156만원)  
 • 월종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지급  
 •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명칭	사이트 주소
4대보험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
국민건강보험EDI(국민건강보험공단)	edi.nhis.or.kr
국민연금EDI(국민연금공단)	minwon.nps.or.kr
고용보험EDI(한국고용정보원)	www.ei.go.kr



- 신청접수**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센터 | 1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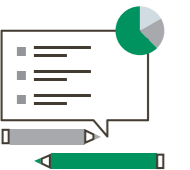
## TIP |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  
 > 지원내용 | (기존가입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40%, (신규가입자) 90%(5인 미만 90%)
- 건강보험료 50%감면 ('18년 한시)**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신규가입자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근로자
- 4대보험 신규가입시 2년간 세액공제** >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

KEYWORD | 재도전 지원정책 찾기

NO	키워드분류	지원제도	세부키워드	페이지
<b>1</b>	<b>종합지원</b>			
1	종합지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용자, 종합전문상담	6
<b>2</b>	<b>신용회복 및 채무조정</b>			
2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용자, 종합전문상담	6
		재창업 자금(일반)	채무감면, 변제유예분할상환, 자금용자	8
		개인 신용회복 절차	신용회복	30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연장	32
		개인 회생 제도	개인회생, 채무상환, 잔여채무 면책	35
		개인 파산·면책 제도	채무상환, 잔여채무 면책	37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	39
		법인기업 파산 제도	기업파산, 재산 매각배당	52
		중소기업 간이회생 제도	채무상환, 분할변제	62
		기업회생 제도	채무상환, 분할변제	63
		중소기업 워크아웃	채무조정, 대출만기 연장, 금리 재조정	65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융지원, 채권행사 유예, 이자감면, 이자율 인하	66
		신용정보 불이익 해소	신용회복, 신용정보 공유제한	79
<b>3</b>	<b>자금 및 보증</b>			
3-1	자금지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18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	자금지원, R&D	20
		재도전기업 연계 공공기술사업화	자금지원, R&D	22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	자금지원, R&D	69
3-2	자금투자	재창업지원펀드	자금투자,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16
		성장사다리 재기지원펀드	자금투자	72
		재기지원펀드	자금투자	17
3-3	자금용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용자, 종합전문상담	6
		재창업 자금(일반)	채무감면, 변제유예, 분할상환, 자금용자	8
		재창업 자금(용자상환형)	채무감면, 변제유예, 분할상환, 자금용자	10
		사업전환 지원	자금용자,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제지원	67
		구조개선 전용자금	자금용자	70
		신용보증기금 재기보증	보증지원	11
3-4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 재기보증	보증지원	12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보증지원	13
		재도전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보증지원	14
3-5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제도	성실경영평가	26

NO	키워드분류	지원제도	세부키워드	페이지
<b>4</b>	<b>교육</b>			
4	교육	재도전 성공패키지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18
		재기 중소기업 경영자 힐링캠프	교육	23
		K-Global Re-Startup 컴백 캠프	교육, 종합전문상담	25
<b>5</b>	<b>컨설팅 및 비용지원</b>			
5-1	종합전문상담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용자, 종합전문상담	6
		K-Global Re-Startup 컴백 캠프	종합전문상담	25
5-2	컨설팅 및 멘토링	재창업지원펀드	자금투자, 컨설팅 및 멘토링	16
		재기지원펀드	자금지원, 컨설팅 및 멘토링	17
5-3	컨설팅 및 비용지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18
		사업전환 지원	자금용자,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제지원	67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컨설팅 및 비용지원	58
		중소기업 구조개선 계획 수립 지원	컨설팅 및 비용지원	59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컨설팅 및 비용지원	61
사업정리 컨설팅	컨설팅 및 비용지원	51		
<b>6</b>	<b>기타지원</b>			
6-1	자산매매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증대장터	자산매매	55
6-2	신용정보 공유제한	신용정보 불이익 해소	신용회복, 신용정보 공유제한	79
6-3	세제지원	사업전환 지원	자금용자,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제지원	67
		재기중소기업인 조세 지원	세제지원	76
6-4	사무공간	재도전 성공패키지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18
6-5	법인신용카드발급, 자동차리스	재기법인 법인카드 발급 및 자동차리스 지원	법인신용카드발급, 자동차리스	15
6-5	클라우드 펀딩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자금 조달	클라우드 펀딩, 투자자 모집	82
6-6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84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발행일

2018. 1

발행처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T. 055.751.9634 F. 055.751.9629

기획·제작·인쇄

인투디자인 T. 042.636.3915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